

● 제301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##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2464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박기재 의원외 10명
- 나. 제안일 : 2021. 5. 27.
- 다. 회부일 : 2021. 6. 1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음.
- 이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. (안 제15조제2항)

- 민간위탁 관련 그 밖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5조 제3항)
- 센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로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”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‘시건가센터’)“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, 민간위탁 및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시행 변경 (안제15조)

- 개정조례안은 시건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,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(안 제15조제2항)하고, 조례에 사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(안 제15조제3항)하도록 하였음.

현행	개정안
제15조 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 <u>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.</u>	제15조 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에</u>

<p>③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1)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
---	---

- 이는 시건가센터가 2019년 개정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바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<sup>2)</sup>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라 시

1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조의2(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)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 <개정 2019.6.11>

**1. 「건강가정기본법」**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**

4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

건강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도·감독 사항 변경 (안 제16조)

- 개정조례안(안 제15조제2항)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건강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을 하고, 서류 제출 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지도·감독에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항<sup>3)</sup>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해당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외에 서울시로부터 연 1회 이상의 지도·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사항을 시건강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 (보고 및 조사)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하</p>	<p>제16조(지도·감독 등)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</p>

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3.>

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  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 
수 있고, 센터의 수탁자는 지도  
· 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  
다.

### 3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건가센터의 시설유형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시건가의 민간위탁 및 지도·감독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,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